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Roles and Func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on Juvenile Justice Cases - Focusing on the Survey of Awareness of Court-Appointed Assistant -

박 호 현** · 윤 현 석***

Park, Ho-Hyun · Yoon, Hyun-Seok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조사방법
- IV. 조사결과
- V. 논의 및 결론

┃ 접수일자: 2019년 11월 10일 ┃ 심사일자: 2019년 11월 20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2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251)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찰학박사, 제1저자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경찰학박사, 교신저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제도.

I. 서론

소년범죄를 규율하는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¹⁾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년에게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이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²⁾ 이에 소년사법 전반에 보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판절차에서 처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 이념은 국친사상이나 교육사상과 같은 사상에 의해 실현되기보다 적법절차의 보장과 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소년사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⁴⁾ 우리나라는 적법절차의 보장과 관련하여 국선보조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법 제17조의2(2007. 12. 21. 개정, 법률 제 8439호)에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소년들의 인권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 도입하였으며, 소년사법들을 올바르게 계도하여 범죄자의 길이 아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소년보호절차에서 보조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호인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준용(소년법 제17조 제6항)하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⁵⁾

국선보조인은 해당 소년의 보호자와 소년의 문제를 의논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소년과 서로 소통하게 하여 정서적 유대를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소년에게

- 1) 윤현석·전명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p.347.
- 2) 원혜옥,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p.30.
- 3)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2012, p.297.
- 4) 원혜옥, 위의 논문, p.15.
- 5) 김다숙,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p.689.

적절한 보호처분을 소년법원에 제안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⁶⁾ 이처럼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은 법원의 협력자 역할과 동시에 소년의 후견인 및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⁷⁾ 또한 소년법 17조의2 제1항에서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필수적 선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17조의2 제2항에서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법원 직권이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선정을 규정하고 있다.⁸⁾ 필수적 선정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또는 소년원)의 분류심사관의 활동과 국선보조인의 활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수용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이 필수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소년의 권리보호에 미흡할 소지가 있으며, 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하는 판사의 경우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년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는 소년보호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소년에게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소년의 이익을 최대한 옹호받기 위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⁹⁾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는 오직 국선보조인 개인과 판사의 개인 역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선보조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도입된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연구는 개정 소년법과 소년보호이념의 고찰과정에서 외국의 국선보조인제도의 비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을뿐,¹⁰⁾ 국선보조인제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국선보조인에 대한 역할 및 인식을 분석

6) 김다숙, 앞의 논문, p.689.

7) 최병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소년사법”, 「소년법연구」, 제1호, 한국소년법학회, 2002, p.522.

8) 이동원·박병훈,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진단의 견서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p.283.

9) 이동원·박병훈, 위의 논문, p.282.

10) 원혜옥,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방안: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동원·박병훈, 위의 논문, 2015; 원혜옥, 앞의 논문, 2016.

하고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에 대한 역할 및 인식,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고 국선보조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소년사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국선보조인제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에 적합한 정책과 법을 제정하거나 소년의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 적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년사범과 소년보호주의

소년사범은 소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지칭하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절차에 따라 특별한 처우를 하기 위한 법체계를 뜻한다.¹¹⁾ 이러한 소년사범은 복지 또는 형사사범의 지도이념의 강조에 따라 복지가 중요시되면 처벌보다 처우를, 형사사범을 중요시하면 적법절차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성인에 대한 형사사범제도와 차이를 보이며 소년법제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의 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소년보호처분의 환경조성과 성행교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호이념’을 기본적 지도이념으로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이념은 범죄가 발생하기

11) 윤현석·전명길, 앞의 논문, p.348;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62; 강지명,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범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5.

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 형사정책의 이념과도 일치한다.¹²⁾ 소년보호주의가 소년의 특성에 근거하여 소년사건을 성인사건과 달리 처리하고 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이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사법에서 보호주의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¹³⁾

2. 국선보조인제도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소년법에서 보조인에 해당한다.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시설 내 보호소년 등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¹⁴⁾ 소년심판규칙에 의하면 국선보조인은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범연수생” 등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교육자등”과 같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¹⁵⁾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과 전문적인 교육능력을 갖춘 교육자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소년사범을 사회가 좀 더 이해하고 소년보호절차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재사회화의 달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¹⁶⁾

3. 선행연구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제도가 신설된 후

12) 배종대,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 2000, p.540; 강지명, 앞의 논문, p.10.

13) 원혜옥, 앞의 논문, p.15.

14) 황지태·김지영·원혜옥·김지연,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총서 16-AA-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p.8.

15)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09. 02. 검색)

16) 황지태·김지영·원혜옥·김지연, 위의 논문, p.9.

진행되었다. 원혜옥(2007)은 소년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소년사법에 관여하는 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년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동원·박병훈(2015)이 광주가정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전문가 진단의견서 325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년의 재범가능성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보호능력과 과거 비행관련 경력을 제시하였다. 최근 원혜옥(2016)이 국선보조인제도가 소년보호주의 이념과 적법절차원칙을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로서 운영되기 위해 각국의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보조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선정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한 명부 작성 도입, 소년사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국선보조인 운영에 대한 법률 및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국선보조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국제도의 검토 및 진단평가서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을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선보조인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 할 것이다.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7년~2018년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자 서울가정법원 22명, 광주가정법원 9명, 인천가정법원 15명, 전주가정법원 4명, 수원가정법원 13명이며 각 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제도 담당자 협조를 통해 명부를 확보했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¹⁷⁾

17) 소년심판규칙에 국선보조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등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자는 법률전문가(33명, 52.4%)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4	69.8
	여	19	30.2
지역	서울가정법원	22	34.9
	광주가정법원	9	14.3
	인천가정법원	15	23.8
	전주가정법원	4	6.3
	수원가정법원	13	20.6
학력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6	9.5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	9	14.3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14	22.2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8	12.7
	대학교 졸업	26	41.3
직업	변호사	33	52.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	21	33.3
	교사	7	11.1
	교수	2	3.2
자격증 종류 (복수응답)	변호사	34	54.0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3	4.8
	전문상담교사	4	6.3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30	47.6
	사회복지사	18	28.6
	교원자격증	7	15.4
	기타	11	17.5

2.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는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현행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보완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소년보호사건 당사자와 국선보조인간의 참여관찰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에서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실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아래 <표 2>와 같이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선보조

와 소년보호사건 전문가(30명, 47.6%)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박호현·윤현석

인 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국선보조인 활동 경력, 면담 실태, 의견서 작성,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인	문항내용	문항 수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학력, 전공, 직업, 근무지역, 자격증 보유, 자격증 종류 등	8
국선보조인의 활동 경력	활동 기간, 선발 계기,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다른 국선보조인들과 교류 여부, 교류 형태 등	6
국선보조인의 면담 실태	면담 소요시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 소년접견 형태, 면담 상황에 대한 보조인의 만족도 등	8
국선보조인의 의견서 작성	의견 결정시 참조 자료 및 고려 사항, 의견 결정시 강도 높은 처분에 영향을 주는 범죄유형, 개인차 등	7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	국선보조인의 업무 인식 및 업무 수행 능력, 보조인 업무에 도움되는 직업의 장점 등	6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보수 수준, 정기적인 교육 필요성 및 교육 내용,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등	10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평가, 활동의 어려움 및 보완점 등	4
전 체		49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실시 전 국선보조인 85명에게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지 배부 일정을 확인하고 직접 배부하였다. 설문지 수거는 같은 방식으로 2019년 4월 29일부터 최종 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6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변인의 내용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1. 국선보조인의 활동 경력

(1) 국선보조인 활동 기간, 선발 및 시작 동기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각 14명(22.2%), 1년 이상 2년 미만 10명(15.9%), 4년 이상 5년 미만 9명(14.2%), 3년 이상 4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8명(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선보조인 선발은 법원의 위촉공고 23명(36.5%),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음 19명(30.2%), 관계 공무원의 권유 15명(23.8%), 기존 보조인의 권유 10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는 <표 3>과 같이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명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내 용	빈 도	백분율
사명감	10	15.9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25	39.7
관련기관 권유로	8	12.7
지인권유나 요청	2	3.2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5	7.9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	20.6

(2) 국선보조인의 평균 한 해 담당 사건 수, 다른 보조인과 교류 및 형태

국선보조인이 평균 한 해 담당하는 총 사건 수는 10건 이상 20건 미만 31명(49.2%), 10건 미만 29명(46.0%), 20건 이상 3명(4.8%)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는 48명(76.2%)이 교류하고, 15명(23.8%)은 교류가 없다고 하였다. 교류 형태는 워크숍 32명(50.8%), 개별적 연락 25명(39.7%), 기타 12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선보조인의 면담 실태

(1) 소년별 면담 소요시간 및 적정 면담시간, 의견서 작성 총 소요시간

소년별 면담 소요시간은 1시간 미만 26명(41.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1명(33.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0명(15.9%), 3시간 이상 6명(9.5%)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인이 생각하는 소년별 적정 면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7명(42.9%)과 1시간 미만 20명(3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소년당 의견서 작성 총 소요시간은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4명(22.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이 각각 12명(19.0%),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9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선보조인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

국선보조인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표 4>와 같이 면담장소가 보호소년과 면담자에게 안정감을 주는가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고, 직원들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상담시설 등 만족도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58.7%)로 나타났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의 다소 부정적인 평가(31.8%)도 높게 나타났다.

소년과 면담시 소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가는 국선보조인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이 잘 되는지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인 평가(20.6%)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과 부모들의 협조, 소년들의 반성 및 참회 정도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표 4> 국선보조인의 면담 상황 만족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면담장소의 보호소년 및 보조인의 안정감	0 (0%)	0 (0%)	9 (14.3%)	41 (65.1%)	13 (20.6%)
직원과의 협조 및 의사 소통	0 (0%)	4 (6.3%)	0 (0%)	31 (49.2%)	28 (44.4%)
상담시설 등 만족도	2 (3.2%)	11 (17.5%)	9 (14.3%)	24 (38.1%)	13 (20.6%)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	0 (0%)	5 (7.9%)	8 (12.7%)	41 (65.1%)	9 (14.3%)
소년과 면담시 소년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	0 (0%)	0 (0%)	0 (0%)	13 (20.6%)	50 (79.4%)
면담시 부모들의 협조	0 (0%)	4 (6.3%)	11 (17.5%)	33 (52.4%)	15 (23.8%)
면담시 소년들의 협조	0 (0%)	2 (3.2%)	8 (12.7%)	34 (54.0%)	19 (30.2%)
면담시 소년들의 반성 및 참회 정도	0 (0%)	0 (0%)	12 (19.0%)	37 (58.7%)	14 (22.2%)

3. 국선보조인 의견서 작성

(1) 국선보조인 의견 결정시 참조 자료 및 고려 사항

보조인 의견 결정시 참조하는 자료는 <표 5>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범죄소년) 및 진술조서(촉법·우범소년),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사건송치서, 법원의 결정전 조사서 등을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선보조인 의견 결정시 참조 자료

내 용	빈도	백분율
사건송치서	42	15.1
경찰의견서	34	12.2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49	17.6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	45	16.1

경찰의 비행예측자료표	12	4.3
검사의 결정전 조사서	15	5.4
법원의 결정전 조사서	41	14.7
판결전 조사서	24	8.6
분류심사서	17	6.1
합 계	279	100

또한 보조인 의견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표 6>과 같이 범죄관련 사항과 범죄경력은 대부분의 국선보조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과 성장과정,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는 각각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도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등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 의견도 각각 28명(44.8%), 15명(23.8%)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 능력, 진술태도,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자, 제법 가능성은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피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는 국선 보조인 대부분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6> 보조인 의견 결정시 고려 사항

내용(중복응답)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범죄관련사항	0 (0%)	0 (0%)	4 (6.3%)	29 (46.0%)	30 (47.6%)
범죄경력	0 (0%)	0 (0%)	0 (0%)	26 (41.3%)	37 (58.7%)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0 (0%)	0 (0%)	4 (6.3%)	25 (39.7%)	34 (54.0%)
성장과정	0 (0%)	0 (0%)	10 (15.9%)	25 (39.7%)	28 (44.4%)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0 (0%)	4 (6.3%)	4 (6.3%)	25 (39.7%)	30 (47.6%)
학력 및 학교생활	0 (0%)	13 (20.6%)	15 (23.8%)	27 (42.9%)	8 (12.7%)
교우관계	0 (0%)	4 (6.3%)	11 (17.5%)	27 (42.9%)	21 (33.3%)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0 (0%)	0 (0%)	2 (3.2%)	22 (34.9%)	39 (61.9%)
소년의 진술태도	0 (0%)	0 (0%)	3 (4.8%)	29 (46.0%)	31 (49.2%)
향후 생활 계획	0 (0%)	0 (0%)	2 (3.2%)	32 (50.8%)	29 (46.0%)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 자료들	0 (0%)	2 (3.2%)	14 (22.2%)	33 (52.4%)	14 (22.2%)
재범 가능성	0 (0%)	0 (0%)	5 (7.9%)	27 (42.9%)	31 (49.2%)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	0 (0%)	0 (0%)	0 (0%)	31 (49.2%)	32 (50.8%)

(2) 강도 높은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 면담시 소년의 태도, 국선보조인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

강도 높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에 성폭력범죄를 31명(49.2%)과 폭행 17명(27.0%)이 답하였으며, 면담시 소년의 태도(용도, 언행, 후회 및 참회의 정도)는 처분 결정에 매우 영향을 준다 41명(65.1%), 약간 영향을 준다 17명(26.9%),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5명(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인 의견 결정에 있어 국선보조인의 개인차는 약간 영향을 준다 28명(44.4%),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명(28.6%), 매우 영향을 준다 17명(27.0%) 순으로 나타났다.

4.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

(1)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인식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인식은 <표 7>과 같이 평소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자료, 책 등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하는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끼는가는 국선보조인 대부분이 소명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선보조인들과의 정보 교류는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판단에 대한 확

신성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보조인 대부분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심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는 대부분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선보조인의 현재 직무에 윤리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선보조인의 처분 결정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국선보조인의 업무에 대한 인식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소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자료, 책 등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0 (0%)	0 (0%)	18 (28.6%)	35 (55.6%)	10 (15.9%)
내가 하는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낀다.	0 (0%)	0 (0%)	5 (7.9%)	23 (36.5%)	35 (55.6%)
다른 국선보조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 (0%)	3 (4.8%)	12 (19.0%)	44 (69.8%)	4 (6.3%)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다.	26 (41.3%)	30 (47.6%)	2 (3.2%)	5 (7.9%)	0 (0%)
내 자신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18 (28.6%)	17 (27.0%)	6 (9.5%)	18 (28.6%)	4 (6.3%)
판사의 최종결정에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다.	24 (38.1%)	15 (23.8%)	7 (11.1%)	11 (17.5%)	6 (9.5%)
내가 하는 일은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0 (0%)	2 (3.2%)	5 (7.9%)	37 (58.7%)	19 (30.2%)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직무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 (33.3%)	19 (30.2%)	12 (19.0%)	6 (9.5%)	5 (7.9%)
나의 의견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4 (6.3%)	14 (22.2%)	8 (12.7%)	27 (42.9%)	10 (15.9%)

(2) 국선보조인의 업무수행 능력,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

국선보조인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표 8>과 같이 나는 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지, 관련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소년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국선보조인의 업무수행 능력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0 (0%)	0 (0%)	0 (0%)	38 (60.3%)	25 (39.7%)
나는 관련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0 (0%)	0 (0%)	0 (0%)	41 (65.1%)	22 (34.9%)
나는 소년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0 (0%)	0 (0%)	0 (0%)	27 (42.9%)	25 (57.1%)

또한 <표 9>와 같이 소년들의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에서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가는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을 물어보는지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내 처분이 적합하지만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편인가는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소년들의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	17 (27.0%)	20 (31.7%)	6 (9.5%)	13 (20.6%)	7 (11.1%)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을 물어본다.	6 (9.5%)	15 (23.8%)	4 (6.3%)	22 (34.9%)	16 (25.4%)
시설내 처분이 적합하지 만,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편이다.	6 (9.5%)	22 (34.9%)	8 (12.7%)	20 (31.7%)	7 (11.1%)

(3)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현재 직업의 강점 및 도움이 되는 직업관련 지식

내 직업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강점이 있는지는 그렇다 56명(88.9%), 아니다 7명(11.1%)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어떠한 점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 26명(41.3%), 심리 및 상담기술에 대한 이해 22명(34.9%), 청소년에 대한 이해 15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5.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보수 수준, 정기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내용의 충실성 정도

국선보조인의 보수 수준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34명(54.0%), 적절하다 16명(25.4%), 매우 적절하지 않다 8명(12.7%), 전혀 적절하지 않다 5명(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지는 조금 필요하다 30명(47.6%), 매우 필요하다 29명(46.0%), 별로 필요하지 않다 4명(6.3%) 순으로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는 있다 47명(74.6%), 없다 16명(25.4%)로 나타났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9명(56.3%),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4명(25.0%), 필요성이 없어서 3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충실하다 32명(68.1%), 매우 충실하다 8명(17.0%), 별로 충실하지 않다 7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선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

국선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표 10>과 같이 청소년 심리, 상담 기술 등은 대부분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선보조인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과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등은 약간 필요한 것으로,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는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국선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	0 (0%)	2 (3.2%)	2 (3.2%)	20 (31.7%)	39 (61.9%)
대상자와의 상담기술	0 (0%)	0 (0%)	0 (0%)	23 (36.5%)	40 (63.5%)
국선보조인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	0 (0%)	0 (0%)	14 (22.2%)	39 (61.9%)	10 (15.9%)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	6 (9.5%)	10 (15.9%)	24 (38.1%)	19 (30.2%)	4 (6.3%)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0 (0%)	0 (0%)	10 (15.9%)	37 (58.7%)	16 (25.4%)

(3) 국선보조인의 운영 및 관리

국선보조인 운영은 <표 11>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과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는 대부분 체계적으로 운영(57명, 90.5%)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보조인의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 비율은 비슷해야 함 35명(55.6%)으로 나타났다.

<표 11> 국선보조인의 운영

내 용	빈도	백분율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	39	61.9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19	30.2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5	7.9

6.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

(1)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평가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국선보조인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지는 매우 그렇다 40명(63.5%), 약간 그렇다 23명(3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국선보조인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는 약간 그렇다 34명(54.0%), 매우 그렇다 29명(46.0%)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지는 약간 그렇다 33명(52.4%), 매우 그렇다 26명(41.3%), 보통이다 4명(6.3%)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약간 그렇다 39명(61.9%), 매우 그렇다 24명(38.1%)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

국선보조인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12>와 같이 시간적 여유는 대부분 약간 그렇다로, 보수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로, 관련지식이 부족한지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시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협조적인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선보조인간 상호협조는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는가는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선보조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대

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가는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해코지 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

내 용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0 (0%)	5 (7.9%)	6 (9.5%)	43 (68.3%)	9 (14.3%)
보수가 적다.	0 (0%)	26 (41.3%)	28 (44.4%)	9 (14.3%)	0 (0%)
관련지식이 부족하다.	12 (19.0%)	41 (65.1%)	0 (0%)	6 (9.5%)	0 (0%)
면담시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다.	16 (25.4%)	31 (49.2%)	6 (9.5%)	8 (12.7%)	2 (3.2%)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15 (23.8%)	39 (61.9%)	5 (7.9%)	4 (6.3%)	0 (0%)
국선보조인간 상호협조가 부족하다.	10 (15.9%)	31 (49.2%)	4 (6.3%)	18 (28.6%)	0 (0%)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0 (0%)	12 (19.0%)	8 (15.4%)	26 (41.3%)	11 (17.5%)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	3 (4.8%)	18 (25.7%)	10 (15.9%)	24 (38.1%)	8 (12.7%)
국선보조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2 (3.2%)	18 (28.6%)	8 (15.4%)	28 (44.4%)	7 (11.1%)
대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	4 (6.3%)	15 (23.8%)	22 (34.9%)	19 (30.2%)	0 (0%)
대상자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33 (52.4%)	16 (25.4%)	6 (9.5%)	8 (12.7%)	0 (0%)

(2)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사항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13>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국선보조인 워크숍 활성화, 교육 및 연수 강화, 국선보조인에 대한 포상확대는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의 관리 감독 강화는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활동사례집 및 회보 발간	5 (7.9%)	19 (30.2%)	28 (44.4%)	9 (14.3%)	2 (3.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0 (0%)	0 (0%)	7 (11.2%)	36 (57.1%)	20 (31.7%)
국선보조인 워크숍 활성화	0 (0%)	11 (17.5%)	4 (6.3%)	39 (61.9%)	9 (14.3%)
교육 및 연수 강화	0 (0%)	10 (15.9%)	0 (0%)	42 (66.7%)	11 (17.5%)
역할 및 권한 강화	3 (4.8%)	10 (15.9%)	11 (17.5%)	25 (39.7%)	14 (22.2%)
법원의 관리 감독 강화	2 (3.2%)	32 (50.8%)	4 (6.3%)	19 (30.2%)	6 (9.5%)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	2 (3.2%)	9 (14.3%)	11 (17.5%)	23 (36.5%)	18 (28.6%)
국선보조인에 대한 포상의 확대	3 (4.8%)	12 (19.0%)	10 (15.9%)	24 (38.1%)	14 (22.2%)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년보호주의 이념이 소년사법체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 분석·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선보조인의 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활동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한 해 담당하는 총 사건 수는 10건 이상 20건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 청소년을 돕거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정도를 고려하여 참여하였다. 또한 대부분 국선보조인들간의 교류가 있었고 교류형태는 워크숍이나 개별적 연락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국선보조인의 면담 실태를 살펴보면, 면담 소요시간은 1시간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적정 면담 시간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년 당 접견 횟수는 대부분 1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견 형태는 국선보조인 사무실과 분류심사원 방문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관계인과의 접견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와 만남이 이루어졌다. 국선보조인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면담시 부모와 소년들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면담시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에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 공감 형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선보조인 의견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선보조인 의견 결정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 법원의 결정전 조사서를 가장 많이 참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생활환경,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도 높은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으로 성폭력범죄와 폭행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면담시 소년의 태도가 처분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보조인의 개인차가 의견 결정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선보조인 업무에 소명의식을 느끼며 다른 국선보조인들과의 정보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나 확신성이나 의견반영을 높

이기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등 업무수행 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나, 소년들의 예상처분에 대한 답변이나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는 자신감이나 확신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펴보면, 국선보조인의 보수 수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며 교육 내용은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및 시간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선보조인 운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선보조인 관리는 대부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자격은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한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보람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 중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견과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답이 많았다. 또한 국선보조인 활동에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국선보조인 워크숍 활성화 및 교육 및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분시설의 다양화 등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과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방안 및 워크숍 활성화를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선보조인은 비행청소년을 돕고자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만 보호소년들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해당 보호소년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소통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선보조인 워크숍을 활성화하여 모범적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기술에 대한 현장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선보조인은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호자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

문에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범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년을 위한 변호기준을 마련하고 소년을 변호하고자 하는 보조인에 대해 다양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확대를 통한 상담시설 등의 환경개선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업무 혹은 비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범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져 국선보조인제도가 소년사범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로 연구에 참고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선정하여 조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타 지역을 조사하여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선보조인 활동에서 성별, 직업별, 지역별 편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선보조인 업무와 관련된 변인만 측정하였다. 향후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선보조인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선보조인의 인식을 조사하였지만,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5.
- 김다숙,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p.689.
-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2012, p.297.
- 배종대,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 2000, p.540.
- 윤현석·전명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p.347.
- 원혜옥, “국선변호인(보조인)제도의 개선방안: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p.79-96.
- _____,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pp.9-33.
- 이동원·박병훈,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진단의견서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p.282.
-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62.
- _____,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소년사법”, 「소년법연구」, 제1호, 한국소년법학회, 2002, p.522.
- 황지태·김지영·원혜옥·김지연,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A-02, 2016.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Roles and Func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on Juvenile Justice Cases
- Focusing on the Survey of Awareness of Court-Appointed
Assistant -**

Park, Ho-Hyun · Yoon, Hyun-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8022251)

** Lecture,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Police&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Key Words

Juvenile Justice, 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Court-Appointed Assistant,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